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책임작성 | 김경민 선임연구원(02-707-8240, kimkm@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3. 신용회복 지원 제도
4. 특별구제 제도
5.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상환부담 및 대출증가와 폐업지연으로 인한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 및 신용회복을 위한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방향을 모색
- 일본과 미국은 소상공인 재생·폐업을 위해 중소기업 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기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 부재
 -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공적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경영·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선 및 채무조정을, 불가능한 경우 조기청산 상담 등 폐업을 지원
 - 미국은 민간기구 기업회생협회의 구조조정 전문가가 위기기업에 개입하여 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전략을,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매각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구조조정 실시
 - 한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생 보다는 원활한 폐업 및 폐업후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패키지 내 사업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가 상이

■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은 민간 신용상담기구, 프랑스는 행정위원회인 과채무 위원회,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

- 미국은 파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민간 신용기구에서 상담을 의무화하여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적기구인 과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의 파산절차 이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
-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조정대상 채무 등에 제한이 존재

■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제공 대출을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탕감을 지원하거나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별구제 제도를 시행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사업자대출(CEBA)을 실시하고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 시 나머지 금액을 탕감
-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사용 시 전액을 탕감해 주었으며,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

■ 위와 같은 주요국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 및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위기극복 또는 폐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기준 완화 및 원금 감면을 확대, 신용상담 의무화 등 활성화를 통한 개인파산 예방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 일부 탕감 등 특별구제 제도 고려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회복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원스톱 기구 필요

1. 서론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4번째 연장에 따라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 확대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위기 장기화로 4차례 연장*

* (최초) '20.4.1.~'20.09.30. → (1차연장)~'21.3.31. → (2차연장)~'21.9.30 → (3차연장) '22.3.31 → (4차연장)~'22.09.30.

-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잔액은 총 133.8조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난 후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

- '21년 12월말 전 금융권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116.6조원, 원금 상환유예 12.2조원, 이자 상환유예 5.1조원 수준

〈표 1〉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채권 잔액('21.12월말)

구분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은행	83.4조원 (44.2만건)	5.0조원 (1.4만건)	1.7조원 (0.3만건)
정책금융기관	32.7조원 (20.8만건)	5.7조원 (0.6만건)	1.6조원 (0.3만건)
제2금융권	0.4조원 (0.1만건)	1.5조원 (1.8만건)	1.7조원 (0.6만건)
합계	116.6조원(65.1만건)	12.2조원 (3.8만건)	5.1조원 (1.2만건)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2.03).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등으로 폐업은 지연되고 있어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도 존재¹⁾

-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1년 9월말 기준 887.5조원 규모로 1년 사이에 14.2%(110조 1천억원)가 늘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 (2021. 1/4분기) 18.8% → (2/4분기) 13.7% → (3/4분기) 14.2%
 가계 대출 증가율 : (2021. 1/4분기) 9.5% → (2/4분기) 10.5% → (3/4분기) 10.0%

- 반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2020년 11.8%로 2019년 12.7%보다 하락

1) 한국은행(2021.12), 금융안정보고서

- 한편 코로나19로 개인파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부실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파산 위험에 더 취약
 -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9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 수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감소
 - 이러한 현상은 일정 수익조차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 * (개인파산 신청건수)(1분기) : (2019) 15,124건 → (2020) 15,187건 → (2021) 16,956건
(개인회생 신청건수)(1분기) : (2019) 32,010건 → (2020) 29,771건 → (2021) 26,709건
 - 개인파산은 경기 후행지수로, 부채상환 시기가 다가오거나 정부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감소할 경우 잠재부실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과 신용회복을 위해 효과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 안정화 되고,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피해회복에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 잠재부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현 시점에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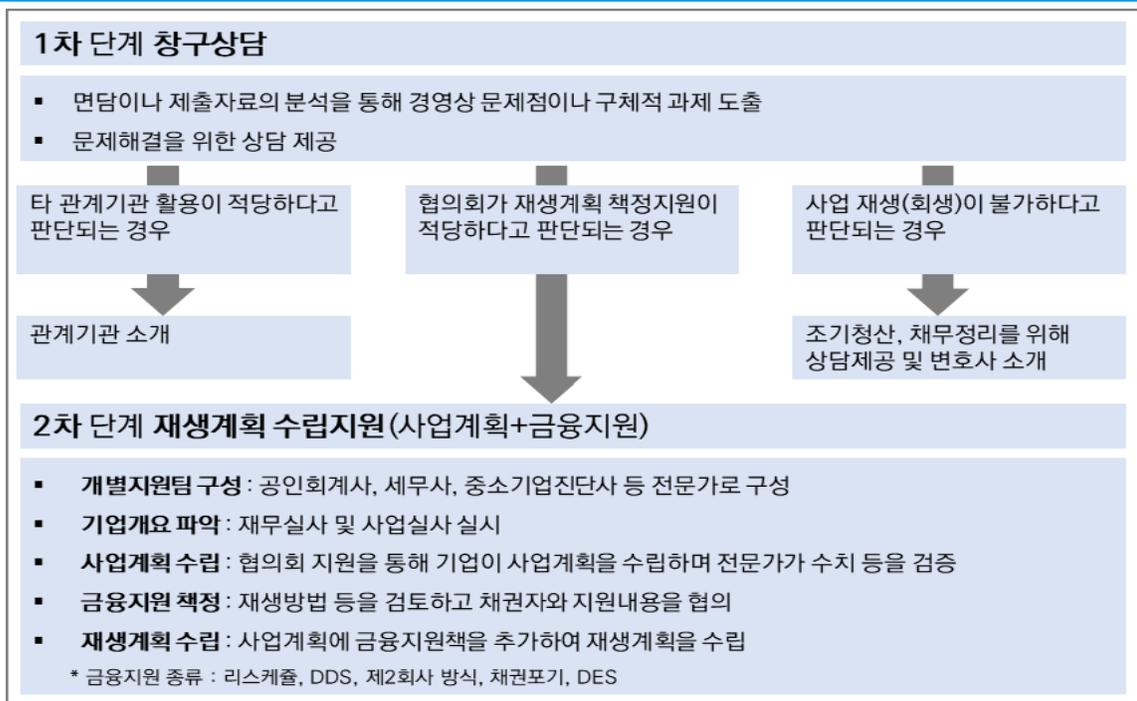
2.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가. 해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 일본은 공적기관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에서 위기기업 대상 상담을 통해 기업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및 채무조정을 통합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기업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관으로 위기 기업의 사업개선과 동시에 채무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을 시행
 - (법적근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된 공적기관
 -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채무상 문제가 있으나 사업의 계속적 수익이 예상되어 사업 재생 의욕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1차 상담시 최근 3분기 결산서 등 채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회사 사업 개요 자료 등을 구비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재생가능성을 판단
 - (재기지원) 1차 상담시 사업의 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재생계획안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지원
 - (폐업지원) 1차 상담시 사업 재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청산 등을 기업에 촉구하고 폐업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지원
 - (성과) 2002년 협의회 설치 이후 2020년까지 재생계획 책정 지원 완료 건수는 15,591건이며, 고용 유지 인원수는 688,060명
-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에서는 제출자료 분석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
 - 1차 상담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진단 및 파악
 - ▲기업의 개요, ▲재무제표, 자금흐름표, 세무신고서 등 최근 3년간의 재무상황, ▲거래 금융기관 등 주주 및 채권·채무 관계 상황, ▲주요 거래처 등 사업형태 및 구조, ▲회사의 체제, 인재 등의 경영자원,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및 결과, ▲거래 금융기관과의 관계, ▲재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의 지원 등을 파악

- 진단 후에는 다음의 요건²⁾을 충족하거나 지역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재생가능성을 판단
 - ① 과잉채무, 과잉설비 등에 의한 재무악화,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여 경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의 수익성이나 장래성 등 사업가치가 있어, 지원에 의해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③ 과잉채무를 이유로 경영이 부진하며 자력에 의한 재기가 곤란한 경우
 - ④ 법적정리를 신청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신용력이 저하되고 사업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등 회생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법적정리 절차보다 많은 회수가 가능하고 대상 채권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 최종적으로 ① 타 관계기관 활용이 적당한 경우, ② 의회의 재생계획안 수립이 적당한 경우, ③ 사업 재기가 불가한 경우의 3가지로 유형화

[그림 1] 일본 중소기업재생협의회 지원내용 및 절차



자료 : 中小機構(2021), 中小企業再生支援協議会のご案内

2) 일반적으로 ①, ②번 요건 충족시 재생계획책정 대상 기업이 되며, 채권포기 등의 채무조정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③~⑤번 기준을 충족해야함

■ 미국은 민간기구 기업회생협회(TMA*)의 구조조정 전문가 개입을 통해 위기기업에 대해 재생을 지원하며, 재생이 어려울 경우 출구전략을 마련

* 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 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과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기업회생 컨설턴트, 변호사, 파산관재인 등으로 구성
 - (지원대상) 파산선고를 했거나 파산에 가까운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기업구조조정 전문가가 파산기업에 파견되어 자문을 제공하거나 임시 경영자로 취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폐업지원) 기업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사업의 매각 및 인수합병 등을 지원
- 미국은 도산법상 이해관계인 기용 불가에 따라 비이해관계인인 민간기구 전문가들을 통해 기업 재생을 지원

■ 미국의 기업회생협회는 구조조정 전문가의 기업상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

- 기업생존을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기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최종 재생가능성을 판단
 - 기업생존을 위해 ①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핵심 비즈니스가 있는지, ② 적절한 브리지 파이낸싱이 있는지, ③ 충분한 조직자원이 있는지 3가지 요건을 분석
 - 기업의 경쟁력 있는 포지션,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재무, 마케팅, 오퍼레이션, 조직 구조 및 인력 분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평가 진행
- 최종적으로 기업이 ① 파산위험에 처해져 있는 경우, ② 상당한 손실은 있으나 생존은 아직 위협받지 않은 경우, ③ 단순히 사업이 쇠퇴한 경우로 유형화

〈표 2〉 미국 기업회생협회의 단계별 지원 내용

구분	단계별 지원 내용
1단계	경영진 변경
2단계	기업진단, 위기원인 파악
3단계	재생전략 및 출구전략 수립(기업의 매각, 합병, 기술이전, 구조적 청산 등)
4단계	채권자, 거래기업과의 교섭을 통해 기업재생에 대한 협력 요청
5단계	기업이 자력으로 생존 가능 시 재기서비스 종료

자료 : 김정은(2013), 국내의 재기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나. 한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특화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인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와 폐업, 폐업 후 활동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는 4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 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가 상이
 - (재생지원) 경영개선사업화 사업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
 - (폐업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
 - (폐업후 지원) 재창업사업화 및 재도전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폐업 후 재창업, 업종전환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단 및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재생가능성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단에 따라 경영개선 사업 또는 폐업지원 사업과의 연계 필요

-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진단’과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에 한정적되어 있어 별도의 재생가능성 진단 프로그램 필요

〈표 3〉 중소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22 예산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	약 237.5억원
재창업 사업화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멘토링 + 재창업자금	약 317.3억원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제공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지원 ▪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약 420억원
재도전 역량강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체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운영 ▪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 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	약 184.5억원
합계			약 1,159.3억원

자료 : 2022 중소기업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다.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비교

■ 일본과 미국은 기업의 재생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원활한 폐업 및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 지원에 중점

- 일본은 폐업지원을 위해 조기청산과 채무정리를 위한 전문가를 소개하며 미국은 기업의 매각, 구조적 청산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며 폐업보다는 재생에 중점
- 한국의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은 4개중 3개이며 예산 비중도 약 79.5%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회복 보다는 폐업지원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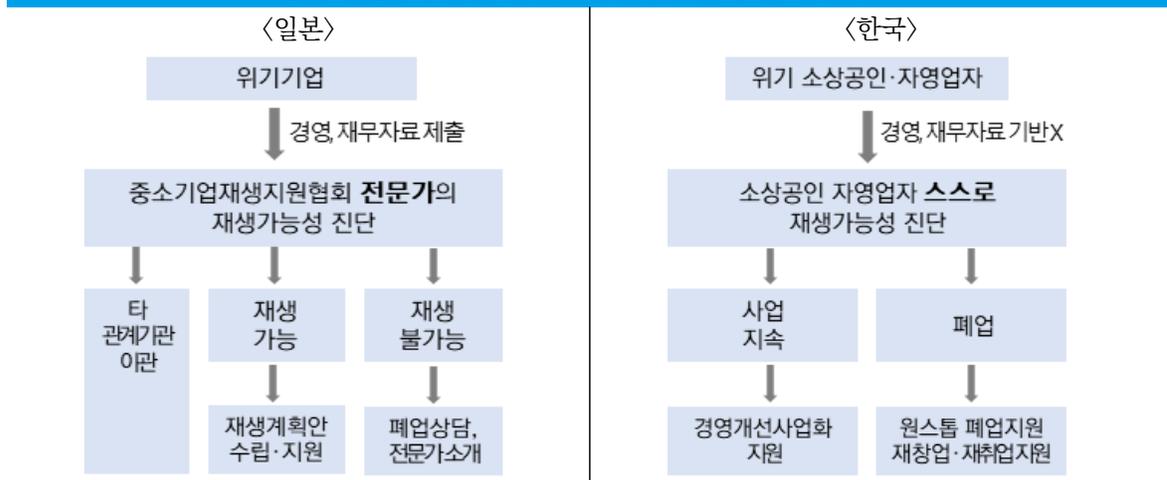
■ 일본과 미국은 위기기업의 재생가능성에 대해 전문가가 경영자료를 기반으로 진단하나, 한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 미흡

- 일본은 위기기업 대상 상담시 상주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생가능성을 진단하며, 미국은 구조조정 전문가가 경영전반을 분석하여 진단
- 한국은 사업을 지속할지 폐업할지 결정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객관적 경영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미흡

■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 마련과 객관적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 재생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경영상 문제점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므로 회계사, 기업회생경영사 등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그림 2] 일본과 한국의 재생가능성 판단 절차 비교



3.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가. 해외 개인채무자 사적 채무조정 제도

■ 미국은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신용상담 및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

- 미국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180일 이내에 공인된 비영리 민간 신용기구인 NFCC, AICCCA³⁾ 등과의 상담을 의무화
- 민간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절차 및 조정방식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Debt Management Plan)을 운영
 - (기능) 채무자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채권자들과 접촉하여 상환조건, 일정 등을 조정하고 부채상환 행위를 대행
 - (대상) 신청자격과 조정대상 채무에 제한이 없어 자영업자 이용 가능
 - (조정내용) 원금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시 채권액 감면, 조정채무에 적용이자율 면제, 연체이자율 및 기타수수료 감면 등을 조정

■ 프랑스는 행정위원회인 과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채무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시행

- 프랑스는 공적기구인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 Surenderttements)를 설치하고 법원의 파산 절차 이전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
- 과채무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조사·판단하여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채무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 동의절차 수행
 - (기능) 채무자의 소득 및 채무수준 등을 진단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거나 법원의 파산절차로 직접 이양할 수 있으며, 사적 채무조정이 실패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법원에 권고하여 승인을 요청
 - (대상) 조정대상 채무에는 제한이 없고, 성실한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조정내용) 이자감면, 변제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을 지원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채무액이 매우 과중할 경우 원금의 일부 탕감 및 지불정지 가능

3) NFCC : National Foundation for Counselling,
AICCCA : Association for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ling Agencies

나. 한국 개인채무자 사적 채무조정 제도

■ 한국은 법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을 지원

- 한국은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 (법적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 (기능)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을 통해 개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소액금융제도 운영, 신용교육 등을 진행
 - (대상) 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기관 채무만 해당되며, 연체기간, 채무범위 등 신청자격에 제한
 - (조정내용)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상환 유예 등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특례 및 특별상환유예 제도, 자영업자 지원 등을 시행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

-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19 피해자 대상 ① 상환유예 1년과 최장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② 연체 3개월 이상일 경우, 원금감면 조건 해당 시 원금 추가 감면 지원
- (특별상환유예)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으로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이자율 추가 인하하고, 생계·운영자금 대출을 신규대출에 미포함 하여 채무조정 신청기준을 완화

〈표 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구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기준	6개월 내 신규대출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6개월 내 신규대출 30% 미만	6개월 내 신규대출 30% 미만
연체기간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89일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채무범위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권		
지원내용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원금감면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X	X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다. 개인채무자 사적 채무조정 제도 비교

- 미국과 프랑스는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조정대상 채무에 제한이 없는 편이나 한국은 제한적
 - 미국과 프랑스는 조정대상 채무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격의 경우 미국은 제한 없고 프랑스는 성실한 과다채무자로 과다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므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적이며 연체기간, 채무범위, 신규대출 비율 등 신청자격도 제한적
- 미국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으로 가기전 신용상담 및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
 - 미국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180일 이내에 공인된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 기구와 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과채무위원회에서의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
-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기준을 완화 하고 신용상담을 의무화 고려가 필요

〈표 5〉 국가별 사적 채무조정 제도 비교(개인 채무자)

구분	미국	프랑스	한국
사적 채무조정기구	NFCC, AICCCA	Commission de Surenderttements (과채무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기관성격	민간기구	공적기구	공적기구
조정대상채무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복위 협약 금융기관 채권
신청자격	제한없음	과다채무자	연체기간, 채무범위 등 제한
기능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DMP) 운영, 신용상담	회생가능 여부 판단, 사적 채무조정 실시	사적 채무조정 실시, 신용교육, 소액금융제도 운영
의무화 여부	신용상담 의무	사적 채무조정 의무	X

자료 : 저자정리

4. 특별구제 제도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사업자금대출(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이하 CEBA)을 실시했으며,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 시 나머지 금액을 탕감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기업·비영리기관을 위해 무이자 비상대출 프로그램인 CEBA 지원
 - (대상) 중소기업·비영리기관(개인사업자 포함)
 - (사용용도) 임금, 임차료 등 사업 운영비
 - (대출금액) 4만 달러 또는 6만 달러 대출이 가능하며, 4만 달러 대출자에 한해 기존 대출 은행에서만 추가 2만 달러 대출 가능
 - CEBA는 일정기간 무이자인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잔액 일부를 조기 상환 시 부채를 탕감
 - (부채탕감 조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탕감 가능 금액(최대 2만달러)을 제외하고 원금을 조기 상환 시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
 - * 6만 달러 대출시, 탕감 가능액을 제외한 4만 달러의 대출잔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면 2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
 - (지원실적) 총 약 147만개의 사업체가 수혜를 받았으며 대출 승인된 총 자금은 492억 달러 수준
 - 상환기간 이후 높은 이자율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
 - (대출이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0%로 제공되며, 미상환 대출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연 5%의 2년 만기 대출로 전환
 - * CEBA의 기존 상환 시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상환 기일을 1년 추가 연장

■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사용시 대출금 전액을 탕감

- 미국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 Act)」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제공

- (대상) 2차 PPP 기준 종업원 300명 이하 소기업, 자영업자, 비영리 단체
- (대출한도) 1차 PPP 1,000만 달러, 2차 PPP 200만 달러로 축소
- (대출금액)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까지 가능하며, 숙박·음식점업은 3.5배까지 가능하고 직원 1명당 급여는 연간 10만 달러까지 인정
- (대출조건) 금리는 1%, 만기는 5년으로, 부채 탕감 신청기간 만료 후 10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 대출 후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8~24주 안에 정부가 정한 부채탕감 대상인 고용관련 비용에 자금을 사용해야 함

- (부채탕감 조건) 대출금을 급여비용 및 기타 적격비용*에 사용하고 대출금의 최소 60%를 급여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전액 탕감

- * 급여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 적격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비용, 전기요금, 운영비

- (지원실적) PPP 대출 승인 건수는 1,145만 8천이고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 수준이며 부채탕감 비율은 전체 대출 건수의 82.6%

■ 미국 정부의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

-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CARES Act의 일환으로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을 통해 대출의 원금, 이자, 수수료를 일시 면제

- (대상) SBA의 ①7(a), ②504, ③Microloans*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 * ① 7(a) : 장·단기 운전자금, 부채재융자, 기계·장비·원자재 매입 등을 위해 대출제공
 - ② 504 : 건물·토지·설비·기계·장비의 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대출제공
 - ③ Microloans : 사업재건, 재개, 수리, 개선 등을 위한 소액대출
- (지원내용) 2020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대출을 받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첫 대출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동안 부과되는 대출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를 SBA가 대신 지급
 - 이미 대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납부한 대출금에 대해 전액 환불 받거나,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대출자의 납부금을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 가능
 - 2021년 2월에서 9월 사이의 대출자는 3개월분의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를 SBA가 대신 지급
 - (지원방법) 대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지원
-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 등을 일정기간 대신 납부함으로써 부채 일부 탕감 효과가 있음

〈표 6〉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구제 해외사례

구분	캐나다 CEBA	미국 PPP	미국 SBA Debt Relief
프로그램	긴급사업자금대출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
지원목적	경제적 타격 지원	고용안정	기업 채무부담 경감
지원대상	소기업·비영리기관 (개인사업자 포함)	종업원 300명 이하 소기업·자영업자 등	SBA의 ①7(a), ②504, ③Microloans를 받은 기업
지원내용	일정기간 무이자 대출	조건부 탕감 가능 대출	정부가 원금, 이자, 수수료를 일정기간 대납
부채탕감	부채탕감(forgiveness)	부채탕감(forgiveness)	부채경감(debt relief)
	부채 일부 탕감	조건부 전액탕감	원금을 정부가 일정기간 대납함으로써 일부 부채탕감 효과
탕감조건	탕감 가능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조기 상환 시 탕감	대출금의 60%를 급여비용으로 사용하고, 적격비용에 사용시 탕감	조건 및 별도신청 X

자료 : 저자정리

5. 정책적 시사점

- (재생·폐업)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 마련과 객관적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필요
 - 해외의 경우, 위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재무상태 등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그 이후 재생 또는 폐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폐업보다는 기업의 재생을 지원
 - 반면 한국은 재생지원 보다 원활한 폐업과 폐업이후 재창업·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지속 또는 폐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스스로 판단
 - 이에따라 경영 위기극복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이 유리함에도 부채를 떠안은 채 사업을 이어나갈 위험 존재
 - 객관적 경영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재생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등 폐업 후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
- (신용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개인파산 예방 필요
 - 해외의 경우, 신용상담 및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의무화 되어있으며 조정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도 제한이 없는 편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
 - 한국도 공적 채무조정으로 가기 전 신용상담 및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예방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신청자격 및 채무범위 기준 등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사적 채무조정제도 참여 확대 유도가 필요
 - 사적 채무조정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재생 및 폐업지원 사업 진행시 신용상담 의무화 고려 필요

■ (특별구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 구제 제도도 고려 가능

- 해외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자금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탕감을 지원하거나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별구제 제도를 시행 중
- 한국도 소상공인 희망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등 정책자금 대상 조건부 특별구제 제도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 조기 상환자 또는 성실 상환자 대상 원금 일부 감면이나, 증빙 가능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분 원금 일부 감면 등 일부 부채탕감 제도 고려 가능
- 이러한 특별구제 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성실상환과 목적 내 사용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을 경감하고 자생력 향상 유도

■ (거버넌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회복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원스톱 기구 필요

-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폐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진흥공단,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위원회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어 지원 주체가 분산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재기·폐업, 채무조정, 세제, 금융 등 다각도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
-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 기구 필요
- 차기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범부처적 지원과 장·단기 방안 수립 필요

참고자료

[국내 문헌]

- 강호석·정혜리(20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관계부처합동(2022),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2021),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 김정은(2013), 「국내외 재기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 박충렬(2022),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정은애(2022),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최수정(2020),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한국은행(2021.12), 「금융안정보고서」

[외국 문헌]

- 中小機構(2021), 中小企業再生支援協議会案内
- 中小企業庁(2021) 中小企業再生支援業務に関する事業評価報告書

[기사 참고]

- 김신영, 「“수입이 있어야”...코로나 여파 개인파산↑·회생은 ↓」, 『뉴스핌』,(2022.2.6.).
- 신호경, 「빛으로 코로나 버틴 자영업자들..대출 887.5조원 1년 새 14%↑」, 『연합뉴스』,(2021.12.23.).

[인터넷 자료]

미국 중소기업청(<https://www.sba.gov/>)

미국 기업회생협회(<https://turnaround.org/>)

법원통계월보(<https://www.scourt.go.kr/>)

소상공인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신용회복위원회(<https://ccrs.or.kr/>)

캐나다 CEBA(<https://ceba-cuec.ca/>)

KOS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홍운선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